

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3. 11. 15(토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2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3차(2003. 11. 14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·숙직 수당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당직근무수당(안 제7조의2 신설)
 -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- 본 개정 조례안은, 당직 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규정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, 2004년 1월 1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

정하여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에 당직 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의 명문화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